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705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경산대입 A-6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088호(2020.12.30.)로 승인 고시된 경산대입 A-6BL 공공주택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 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0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경산대입 A-6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, 임당동 일원

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내 A-6BL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주택유형 변경 등 지구계획 변경)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(주택유형 : 신혼희망타운(공공분양+행복주택) → 공공분양+공공임대)